

지주회사 | 비중확대(유지)

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원샷법), 국회 본회의 통과

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원샷법)이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. 적용대상인 공급과잉업종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8월부터 시행예정임. 원샷법 시행으로 그룹사 간 활발한 M&A가 예상되어 지주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며 자회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해져 지주회사 주가에는 긍정적이라 판단함

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

-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이하 원샷법)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.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3년 한시 특별법임
- 원샷법은 공급과잉업종에 한해서 적용되는데 공급과잉업종과 사업재편 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의 가능여부 판단 세부기준에 대해서 시행령 및 지침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임
- 적용 대상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나 경영권 승계,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경우 승인거부,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 승인취소 및 과태료 부과될 예정

그룹사의 사업재편 가속화, 지주회사 재무구조 개선 기대

- 원샷법 실시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유예기간 연장, 상법절차 간소화, 세제지원 등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룹사 간 M&A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함. 이에 따라 부실기업의 매각, 규모의 경제 달성 등 지주회사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
-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(상장사 20%, 비상장사 40%) 유예기간 연장, 자회사간 공동출자 협용, 손자회사의 중순회사 지분 100% 보유에서 50% 이상 보유로 완화 등 지주회사 전환 요건이 완화되면서 비지주회사 체제의 그룹사의 지주회사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함

지주회사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

- 원샷법 통과에도 동 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적용되므로 직접적인 수혜 지주회사는 3월말 공급과잉업종이 확정된 이후 판단할 수 있음
- 다만 조선, 자동차, 철강,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군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업종 선정 가능성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
-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M&A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주회사 재무구조 개선과 자회사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어 지주회사 주가에는 긍정적이라 판단함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(최관순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팀팀장은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시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4 단계(6개월 기준) 25% 이상 → 적극매수 / 10%~25% → 매수 / -10%~+10% → 중립 / -10%미만 → 매도



원사법 주요 내용

관련법	구분	현행	원사법
상법	소규모분할	규정없음	허용
상법	소규모합병 요건(합병대가로 존속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)	10% 이하	20% 이하
상법	간이합병 시 주총 특별결의 면제요건(피합병회사 보유 주식 수)	90%	80%
상법	반대주주의 비율	20%	10%
상법	합병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	2주	1주(공휴일 제외)
상법	역삼각합병	개정상법 적용	허용
공정거래법	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	100%	50%
공정거래법	자회사 공동출자 규제	출자금지	4년간 유예
공정거래법	부채비율 200% 총족 유예기간	-	4년(신설)

자료 SK 증권

주1: 소규모분할은 총자산 규모 10%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경우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

주2 소규모합병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을 제한